

**여객선 씨스타7호**  
**운항관리규정**  
(내항여객운송사업)

2017년 3월 30일

정도산업 주식회사

제2017-6호

##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

선 명 : 씨스타 7호(4,599톤)

선박번호 : PHR-111034

항 로 : 목호-울릉(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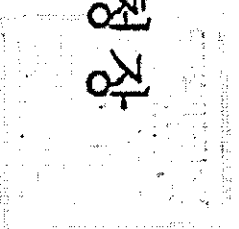
사업자명 : (주)경도산업

사업자 주소: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동해대로 5047

위 선박은 운항관리규정의 심사절차에 따라 심사 완료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17년 3월 3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 목 차

<b>제1장 목적 및 정의</b> .....	1
제1조(목적) .....	1
제2조(용어의 정의) .....	1
<b>제2장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침</b> .....	2
제3조(안전관리 목표) .....	2
제4조(안전관리 방침) .....	3
제5조(방침 등의 숙지 및 확인) .....	3
제6조(임직원 및 선원의 책임과 의무) .....	3
<b>제3장 안전관리 조직 및 체계</b> .....	3
제7조(최고경영자의 책임) .....	3
제8조(안전관리조직) .....	4
<b>제4장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과 임무 등</b> .....	6
제9조(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 .....	6
제10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권한) .....	6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의 근무체계) .....	7
제12조(육상직원의 책임과 권한) .....	7
<b>제5장 선장의 책임과 권한 등</b> .....	8
제13조(선장의 책임과 권한) .....	8
제14조(선장에 대한 적성검사) .....	9
<b>제6장 인력의 배치와 운용</b> .....	9
제15조(채용·배승관리) .....	9
제16조(인수인계) .....	9
<b>제7장 여객선운용계획의 수립</b> .....	10
제17조(여객선 체원 및 운항구역 등) .....	10
제18조(항해업무) .....	10
제19조(입·출항 시 업무) .....	15
제20조(통신업무) .....	16
제21조(여객업무) .....	18

제22조(여객준수 사항의 전달) .....	19
제23조(화물관리) .....	21
제24조(복원성 및 복원성 기록관리) .....	22
제25조(위험물 등의 취급) .....	22
제26조(정박 및 계류) .....	22
제27조(선내 작업안전 관리) .....	23

**제8장 비상상황 대응** ..... **23**

제28조(사고처리 시 준수사항) .....	23
제29조(비상대응) .....	24
제30조(피해보상 등의 조치) .....	26
제31조(안전교육 및 훈련 등) .....	27

**제9장 선박의 점검·정비** ..... **28**

제32조(선박의 안전점검) .....	28
제33조(육상설비 점검) .....	28
제34조(선내 정비 및 점검 등) .....	28
제35조(유류관리) .....	29
제36조(종선의 점검 및 정비) .....	30

**제10장 자료관리** ..... **30**

제37조(문서관리) .....	30
제38조(문서 생산 등) .....	30
제39조(문서관리대장) .....	31
제40조(문서의 폐기) .....	31
제41조(해도관리) .....	31
제42조(여객선 이력장부관리) .....	31

**제11장 운항관리규정의 확인, 검토 및 평가 등** ..... **32**

제43조(운항관리규정 내부심사) .....	32
제44조(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	32
제45조(운항관리규정의 비치 등) .....	33
제46조(규정의 적용) .....	33

**【참고자료】**

○ [붙임1] ~ [붙임15] .....	34~84
------------------------	-------

## 제1장 목적 및 정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운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여객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항업무의 책임 및 업무수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항관리자”란 「해운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로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해사안전감독관”이란 「해사안전법」 제58조에 따라 선박이나 사업장의 해사안전관리 상태를 확인·조사 또는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관리책임자”란 「해운법」 제21조의5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의 수립·이행 및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사업자가 선임한 사람을 말한다.
4. “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5. “직원”이란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운항장 및 운항사와 그 밖에 선원법시행령 제3조의 해원을 말한다.
6. “부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선장 및 직원이 아닌 선원을 말한다.
7. “육상직업원”이란 육상에서 여객 또는 차량의 정리, 유도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선내직업원”이란 선박에서 여객 또는 차량의 정리, 유도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운항계획”이란 기점·종점, 기항지, 항행경로, 항해속력, 운항횟수, 출

항시간, 계절 운항시간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0. “운항기준도”란 항로(기종점, 기항지, 침로, 변침점, 항해장애물 등), 표준운항시각, 항해속력,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하는 구간, 기타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선박의 항로도(항로도를 말한다).

11. “위험물”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에서 정한 위험물 및 승객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물건과 총포, 도검류 등을 말한다.

12. “차량적제도”란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및 「화물적제고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으로부터 심사를 받아 승인한 차량구역을 표시하여 게시한 도면을 말한다.

13. “화물고박장치”란 화물을 선체 또는 화물단위체 등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14. “화물의 적제해도”란 「선박안전법」 제28조의 복원성 유지 및 제12호의 차량적제도 등에 따른 차량화물, 일반화물, 컨테이너화물 등 선내 적제 가능한 화물의 최대 적재증량을 말하며 운항관리규정 심사 시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5. “항로도”란 항로의 출발지·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한 해도 등을 말한다.

## 제2장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제3조(안전관리 목표) 회사는 관리 선박의 안전운항 및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1. 선박의 안전운항 및 환경보호
2.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3. 고객만족
4. 여객 및 화물보호

제4조(안전관리 방침) 회사는 안전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방침을 수립·시행한다.

1. 안전운항 및 환경보호와 관련한 법규 준수
2. 안전 및 환경보호 관련 비상대응훈련의 생활화
3. 부적합사항 발생 시 적절한 시정조치 실시
4. 법령에서 규정한 적절한 인적·물적 자원의 제공
5. 대 고객 서비스 강화

제5조(방침 등의 이행·유지 및 확인) ① 회사는 인명과 선박의 안전 및 해양오염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 및 선원이 안전관리목표 및 방침을 이행·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내부심사 등을 통하여 목표와 방침에 대한 이행·유지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임직원 및 선원의 책임과 의무) 모든 임직원 및 선원은 회사의 운항 관리규정이 항상 양질의 수준으로 운영·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1. 운항관리규정의 숙지 및 준수
2. 여객선 안전의 우선적 확보를 위한 무리한 운항 지양
3.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자격·경력을 갖춘 선원(예비원 포함)의 채용
4. 피승·과적 예방을 위한 승선인원 확인 및 정확한 화물 계측 실시
5.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원의 적정한 교육·훈련 실시
6. 위험물 적재·운송방법 숙지 및 관련법령 준수
7.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제공
8. 기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련 법령의 준수

### 제3장 안전관리 조직 및 체계

제7조(최고경영자의 책임) 최고경영자는 회사가 소유·관리하는 선박의 안



전운항을 위하여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육·해상 직원의 책임, 권한, 상 호관계를 규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임무수행을 위한 목적·인적자원(안 전운항을 위한 최신정보 포함)을 제공한다.

제8조(안전관리조직) ① 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조직 및 관할구역을 두며, 주된 사업소 및 영업소의 관할구역과 안전관리의 책임 범위를 정한다.

② 주된 사업소와 영업소 현황 및 안전관리책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사(주된 사업소)

가. 기본사항

상 호	소 재 지	연락처 (팩스)
정도산업(주)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동해대로 5047	033-734-6433 (033-734-6435)

나. 관할구역

- 전항로 목호↔울릉(도동)/전구간

다. 안전관리책임의 범위

- 목호/울릉 항로간 전반에 관하여 선장과 협력하고 안전운항확보

2. 목호(영업소)

가. 기본사항

상 호	소 재 지	연락처 (팩스)
정도산업(주)	강원도 동해시 임항로 129	033-534-8899 033-534-8960

나. 관할구역

- 전항로 목호↔울릉(도동)/전구간

다. 안전관리책임의 범위

- 목호/울릉 항로간 전반에 관하여 선장과 협력하고 안전운항확보
- 목호터미널 내 승강대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2. 도동(영업소)

가. 기본사항

상 호	소 재 지	연락처 (팩스)
정도산업(주) 도동영업소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길 14	054-791-9081 (054-791-9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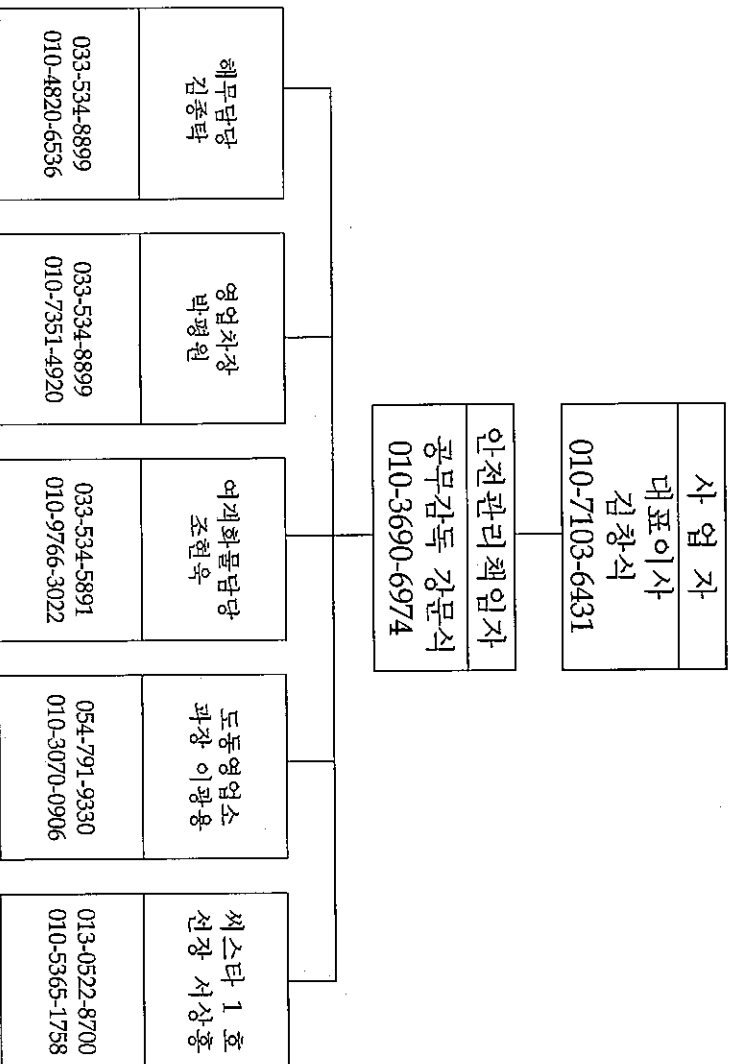
나. 관할구역

- 진항로 묵호↔울릉(도동)/진구간
- 다. 안전관리책임의 범위

- 묵호/울릉(도동) 항로간 전반에 관하여 선장과 협력하고 안전운항 확보

- 도동터미널 내 승강대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 ③ 안전관리조치도는 다음과 같으며, 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를 위하여 선장과 안전관리책임자 및 해당 부서장간에 긴밀하게 협조한다.



## 제4장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과 임무 등

제9조(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 ① 회사는 「해운법」 제21조의5에 따른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는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 중 1인은 수석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최고경영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여객선의 안전운항과 여객 및 화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항관리규정을 수립하고 여객선 운항과 관련한 안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한다.

④ 사업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변경 시 즉시 선박안전기술공단 운항관리센터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해운법에 따른 운항관리규정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권한) ① 수석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운항관리규정 운영의 총괄 책임자로서 선장의 직무와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여객선의 운항 및 기타 수송의 안전 확보에 대해 업무를 총괄한다.

2. 운항관리규정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시행한다.

3. 선박의 운항 전반에 관하여 선장과 협력하여 여객수송의 안전을 확보한다.

4. 안전관련 육상직원 및 육상작업원을 지휘하고, 선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5. 위험물 취급과 관련하여 제반 규정을 준수하도록 선원을 지도·감독한다.

6. 여객선의 정비계획에 따른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관련 증서의 관리 및 유지에 대해 감독한다.

7. 선장 및 기관장이 보고한 시설 결함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한다.
8. 여객의 승·하선시설 및 부잔교(육상시설 포함)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정비 또는 불가피한 경우 관계 기관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9. 여객선 접·이안 및 여객 승·하선 시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0. 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기타 관계기관의 직원이 선박 점검 등을 실시할 경우 점검에 임회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및 최고경영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11. 관계법령의 개정, 사내조직 또는 선박의 변경, 항로의 신설 또는 폐지 등 당해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 선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운항관리규정을 변경·신청한다.

#### 12. 운항관리규정 관련 문서를 관리한다.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의 근무체계)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여객선이 운항하고 있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목호영업소에 근무하여야 한다. 여객선이 운항 중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탈하였을 때에는 여객선과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간 업무 유지가 불가능하거나 부재시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업무대행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선박안전기술공단 운항관리센터와 지방해양수산청장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업무대행자는 업무대행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육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지원·총괄하여야 하므로 선원으로 승선할 수 없으며, 선원 또는 예비선원이 안전관리책임자를 겸임할 수 없다.

제12조(육상직원의 책임과 권한) ① 여객담당자는 여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와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객의 승하선에 관한 업무 총괄
  2. 터미널 승선권 발급 및 승선절차와 관련된 안전관리책임자와의 업무 협의 및 안전조치
  3. 여객 승하선시설 및 종선 등에 대한 관리 업무 총괄
  4. 여객전담선원에 대한 교육·관리
  5. 여객명부 보관·관리
  6. 여객대피시설 등 여객선 내 여객시설에 대한 관리
- ② 해무담당자는 선박의 안전운항 지원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원의 채용·배승·휴가에 관한 사항
  2. 선원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3. 신규채용 선원 직무교육
  4. 재반증서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③ 공무담당자(안전관리책임자겸직)는 선박의 안전운항 지원을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박의 수리 및 선용품 공급
  2. 안전설비 보급 및 관리

### 제5장 선장의 책임과 권한 등

제13조(선장의 책임과 권한) ① 선장은 여객선의 안전운항, 여객과 화물 보호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안전관리목표 및 방침을 시행하고 「선원법」 등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선장은 필요한 경우 선장복무방침을 수립하여 선원이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선장은 인명, 여객선 및 환경보호와 화물보호를 위한 대응조치에 최

우선적인 결정권한이 있으며, 필요할 경우 회사에 물적·인적 지원 요청 권한을 갖는다.

④ 선장은 선박의 통상업무 중 여객관리는 1등 항해사, 정비관리는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① 선장은 「선원법」에서 정하는 적성심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회사는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 제6장 인력의 배치와 운용

제15조(채용·배승 관리) ① 회사는 해당 자격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선원의 채용·승진 및 배승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선장·기관장의 채용·승진 시에는 승무경력, 면담 등을 통하여 지휘능력을 검증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선원 채용·승진에 있어 인사기록카드를 작성·관리한다.

③ 회사 및 선장은 선원과 선박 관련증서 및 선원 교육훈련증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책임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 선원의 승선, 항해시간별 적정 인원배치 및 승선선원의 자격유지를 검증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하여야 한다.

제16조(인수인계) ① 선장 및 기관장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외의 선원은 구두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다.

② 선장의 인수인계서는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선장 이외 선원의 인수인계서는 선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선장 및 기관장의 예기치 않은 일방적인 퇴사 등으로 인수인계서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차하위자가

대행한다.

③ 선장 및 기관장의 인수인계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상 업무 및 비상상황에 있어서 선원의 임무와 책임
2. 선원의 임무와 책임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외부·내부요인
3. 선원의 임무와 책임과 관련하여 과거에 발생하였던 사고경력 및 대처 요령
4. 선원의 임무와 책임과 관련한 문서 관리
- ④ 필요시 선원은 후임자의 여객선 적응 및 관련 교육을 위해 동승할 수 있다.

### 제7장 여객선 운용계획의 수립

제17조(여객선 제원 및 운항구역 등) ① 여객선 씨스타7호의 제원 및 운항 구역은 다음과 같다.

선종	진수일자	총톤수	기관출력
쾌속선	1996.04.01	4,599톤	22,800kW
선박치수(m)	항해속력	항로	항해구역
70.81×21.75×7.18	35노트	목호-울릉	연해

② 여객선 씨스타 7호의 승선인원은 다음과 같다.

1. 최대승선인원 : 1,000명(여객 985 명, 선원 12 명, 임시승선자 3 명)
2. 승무정원 : 9 명

제18조(항해업무) ① 선장은 여객선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예정항로 기상, 본선의 감항성, 화물종류, 적하상태 등을 종합하여 최적항로를 선정한다.  
② 선장 및 기관장 또는 선장 및 기관장이 지정한 자는 운항 중에 매 시간당 1회 이상 아래 사항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항해일지 및 기관일

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항해일지 및 기관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비상 탈출경로 등 특수설비
2. 화재예방
3. 수밀문, 선수문 등 수밀설비 이상 유무
4. 여객 안전 확보 상태
5. 기관 작동상태 등

③ 선장 및 항해사는 시계제한, 악천후, 협수로 통항 시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항해에 철저히 임하여야 하며, 안전운항을 위해 감속운항을 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입·출항시 및 항계 내(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속력 등의 제한) 및 지방해양수산청고시에서 정한 속력 준수)
2. 시계 불량 시 협수로, 사고다발 해역을 통과할 경우
3. 운항 중 돌풍 등 해상기상이 악화되어 감속운항이 필요한 경우
- ④ 선장은 승무정원에 따라 항해 중 적절한 선교당직 및 기관당직 인원을 배정한 항해 당직표를 작성하고 이를 선내 게시하여야 한다.
- ⑤ 항해안전 확보에 필요한 운항기준을 표시한 항로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운항항로1)

항로	출발지 (기점)	종착지 (종점)	항해속 력	항해거리	운항시간
목호-울릉도동항(기두봉통과 위도37도26분, 경도130도52분)	목호	울릉도동항	26노트	87마일	3시간40분
울릉도동항-강릉(기두봉통과 위도37도26분, 경도130도52분)	울릉도동항	목호	26노트	87마일	3시간40분

1)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종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하며, 항로도 별첨



2. 기점·종점 및 기항지의 위치와 그 상호간의 거리

기점(위치)	종점 또는 기항지(위치)	거리	비고
무호	울릉도 도동항	87마일	
울릉도 도동항	무호	87마일	

3. 항로상의 위험구역

- 가. 암초 및 저수심 : 없음
- 나. 사격 및 훈련구역 : 없음
- 다. 어선조업·어장 및 교통 밀집 구간 : 없음
- 라. 관제구역·통항분리구역·특정해역 : 없음
- 마. 기타 항해에 장애가 있는 지점 : 없음

4. 선장이 위치 보고를 해야 하는 지점

가. 무호 - 울릉

연번	보고지점	위도, 경도	비고	보고처
1	출항 후 10분이내 출항보고	-	-	운항관리센터
2	메시 10분, 40분 가두봉 통과 보고, 위치 보고 및	위도 37도 26분 경도 130도 52분	가두봉	
3	울릉 ETA 보고는 입항 1시간 전	-	-	
4	가두봉 통과시 입항 보고 또는 입항완료 직후	-	-	

나. 울릉 - 목호

연번	보고지점	위도, 경도	비고	보고처
1	가두봉 통과시 출항 보고		-	운항관리센터
2	가두봉 및 매시 10 분, 40분 위치보고	위도 37도 26분 경도 130도 52분	가두봉	
3	목호항 입항 20분 전 에 입항보고 또는 입항완료 직후		-	

5. 「선원법」 제9조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하는 구간

구	간	위도, 경도
가. 항구를 출입할 때		
나.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다. 선박의 충돌·침몰 등 해양사고가 빈발하는 해역을 통과할 때		
라.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 1) 안개, 강설(降雪) 또는 폭풍우 등으로 시계(視界)가 현저히 제한되어 선박의 충돌 또는 좌초의 우려가 있는 때
- 2) 조류(潮流), 해류 또는 강한 바람 등의 영향으로 선박의 침로(針路) 유지가 어려울 때
- 3) 선박이 항해 중 어선군(漁船群)을 만나거나 운항 중인 항로의 통행량이 크게 증가하는 때
- 4) 선박의 안전항해에 필요한 설비 등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선박 운항이 곤란하게 될 때

6. 안전운항을 위하여 감속운항을 하여야 할 경우

가. 입·출항 시 항계 내(「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 및 지방해양수산청 고시에서 정한 속력을 준수)

- 나. 시계 불량 시 협수로, 사고다발 해역을 통과 시
- 다. 운항 중 돌풍 등 해상기상이 악화되어 감속운항 필요 시
- 7. 태풍 내습 시 또는 기상악화 시 선박의 피항지
  - 가. 태풍 내습 시 : 사동항, 도동항, 저동항, 천부외항, 동해항, 묵호항
  - 나. 기상악화 시 : 사동항, 도동항, 저동항, 천부외항
- 8. 정기적으로 교행(交行)하는 다른 선박현황

선박명칭	교행시간	교행위치

※ 선장은 본선과 정기적으로 교행하는 다른 선박의 현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안전운항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9. 항로도에 관한 사항

- 가. 운항항로에 대한 항로표시 등의 해도를 보유(「선박실비기준」 제 93조 연해구역 이상)하여야 한다.
  - 나. 해도는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다. 해도를 최신본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⑥ 출항이나 운항을 정지하여야 하는 해상 등의 조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해 선박제원, 운항구역, 기상조건, 복원성 등을 감안하여 출항 및 운항을 정지하여야 한다.
- 2. 기상조건에 따른 출항·운항정지 기준은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 31조와 관련한 별표 10 “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선장

은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항로의 해상상태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는 운항을 정지하여야 한다.

풍속	파고	가시거리
1 평균 풍속 21m/s 이상인 경우	최대파고 3.5 m 이상	1km 이내

※상기 운항 정지 기준은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10 "선박출항통계의 기준 및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함

가. 목호 또는 올통 → 출항시에는 기상청 동해부이 및 올통부이를 기준으로 한다.

3. 선장은 돌풍 등으로 실제 당해 항로의 기상상태가 여객선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항을 중지하거나 회항, 피항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여객선이 운항 중 질은 안개 등으로 시계가 약화된 경우(시정 1km 이내)에는 안전한 곳에 가정박하며, 가정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견시원 배치, 감속(안전속력 유지), 항해등 점등, 무중신호 취명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후 운항하여야 한다.

5. 운항관리자가 안전운항에 저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여 운항중지를 요구한 때에는 운항을 중지하여야 한다.

6. 선박검사 증서상의 운항조건에 따른다.  
제19조(입·출항 시 업무) ① 선장은 출항 전 승선하여야 하는 선원의 승선 여부를 확인한다.

② 선장은 출항 전 승선정원의 초과 및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③ 선장은 출항 시 본선에 승선한 모든 인원수를 최종 확인하여 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한다.

④ 선장은 「선원법」 제7조에 따라 출항 전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등에게 보고한다.

1.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
2. 선박에 화물이 실려 있는 상태
3. 항해에 적합한 장비, 인원, 식료품, 연료 등의 구비 및 상태
4. 항로 및 항해계획의 적정성
5.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기상 및 해상 정보
6. 비상배치포 및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 숙지상태
7.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선장 및 기관장은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3조에 따라 운항관리자와 합동으로 불임6에 따른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그 보고서를 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한다.
- ⑥ 선장은 합동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하며, 조치를 요청받은 안전관리책임자(선박소유자 포함)는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선장은 입항 전 계류시설에 선박을 접안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안전관리책임자나 영업소 또는 취급점이나 운항관리자 등에 확인하여야 한다.
- ⑧ 선장 및 기관장은 입항 전 아래 사항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항해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조타장치
  2. 항해장비
  3. 기관기기 운전 상태
  4. 선수문 등 이상 유무
  5. 갑판기기

제20조(통신업무) ① 선장은 운항관리센터와 교신상태를 유지하고, 출·입항 시 및 항로도에 표시된 위치보고장소 통과 시 운항관리센터에 출·입항

사실 및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선장이 선박안전기술포단 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고종류	보고시기	보고내용
출항보고	출항 직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출항시간, 출항항 및 목적항</li> <li>2. 선원수(승선하여야할 승무원의 승선 여부)</li> <li>3. 승선인원, 하선인원 및 최대승선인원 초과 여부</li> <li>4. 승선권의 보관장소</li> <li>5. 화물 적재량(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li> <li>가. 화물</li> <li>나. 차량</li> <li>6. 도착항 및 도착예정시간(ETA)</li> </ol>
입항보고	입항10분전 또는 입항완료 직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입항(예정)시간 및 입항지</li> <li>2. 이상 유무</li> </ol>
위치보고	운항관리규정에 의한 위치보고지점 도착 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간 및 위치</li> <li>2. 현지 항로의 기상</li> <li>3. 항로의 상태</li> </ol>
출항 또는 운항 중지 보고	출항 또는 운항 할 수 없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간과 위치</li> <li>2. 사유</li> </ol>
기타사항 보 고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위험물의 종류와 그 수량
	비정상적인 운항이 발생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간과 위치</li> <li>2. 사실 내용</li> </ol>
	항해 중 항로상 예상치 못한 장애원인이 있을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간과 위치</li> <li>2. 사실 내용</li> </ol>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은 정보 중 안전운항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달받은 시간</li> <li>2. 사실 내용</li> </ol>
	중간기항지에서 여객이 승하선했을 경우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여객정원수와 현 승선 여객수</li> <li>2. 중간기항지 승선 여객수</li> </ol>
	여객의 정원승선으로 중간기항지의 여객을 수송할 수 없게 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여객정원수와 현 승선 여객수</li> <li>2. 중간기항지 예상 승선 여객수</li> </ol>
	출항 전 운항관리자로부터 통보받은 기상 및 해상상태와 현지항로의 기상 및 해상상태가 현저히 다른 경우	현지 기상 및 해상상태와 위치
	해당 선박에 해양사고가 발생하거나 항해 중 조난선박을 발견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실 내용과 위치</li> <li>2. 구조방법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li> </ol>

③ 선장은 「선원법」 제14조에 따라 떠다니거나 가라앉은 물건 등 선박의 항해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것과 마주쳤을 때에는 그 사실을 가까이 있는 선박의 선장과 해양경비안전권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④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진·출입시간 보고 시에는 항계 내에서는 “VHF 채널12”, 항계 외에서는 “VHF 채널16”으로 교신한다.

⑤ 선장은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사용가능한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해양긴급신고번호 119 또는 구조기관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여객업무) ① 회사는 대표담당자로 하여금 승선권 발행 시 여객의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하고, 여객정원을 초과하여 승선권을 발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여객의 승선 시에는 담당직원을 승강대 입구에 배치하여 여객 신분증 및 승선권을 확인 후 승선하도록 한다.

③ 여객의 승·하선은 승강대를 통하여야 하며, 선장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사전에 승강대를 점검하고 여객이 승·하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여객의 승·하선 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안전조치 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⑤ 여객의 승·하선 시에는 본선 선원 및 선사 육상직원 입회하에 안전하고 질서있게 승·하선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⑥ 선장은 여객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시키지 않으며, 승선인원은 선장이 지정한 자가 확인하여 선장에게 보고한다.

⑦ 선장은 운항관리자가 없는 기항지의 경우 본선 선원 중 여객전담선원을 지정하여 여객이 안전하고 질서있게 승·하선하도록 하여야 하며, 여객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여객선이 운항중일 때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한 선원이 여객 및 선내 특이사항의 발생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하

여야 하며, 기상악화 등 운항 상황이 악화될 때에는 수시로 순찰을 하도록 한다.

⑨ 「해운법」 제21조의2 제5항에 따라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를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하며, 승선권 관리책임자는 수시로 보관장소 및 관리 상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⑩ 선장은 차량적재 시 차량 내 승객이 절대 탑승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⑪ 선원은 화재, 충돌, 퇴선, 테러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선장의 지휘에 따라 여객안전을 위하여 아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비상탈출구 위치 및 대피 방법에 대한 안내방송 이행
2. 담당구역의 여객 대피 안내

⑫ 선장은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설치 및 확인한다.

1. 여객의 출입제한 및 통제구역에 「제한구역」, 「출입금지」, 「통제구역」, 「통행금지」 등의 표지판을 설치한다.
2. 선원의 허락 없이 작동 또는 접촉해서는 안 될 설비 및 장치에 「촉수엄금」 또는 「손대지 맙시다」 등의 표지판을 설치한다.
3. 계단입구나 출입문 높이가 낮은 객실 등에는 「머리조심」 표지판을 부착한다.
4. 선내 편의시설의 고정상태를 확인한다.
5. 항해 중 선원으로 하여금 여객구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수시로 순찰시켜야 하며, 법령 및 운송계약에서 정한 여객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 기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특이사항 발견 시 선장의 지시를 받아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6.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등 특별보호여객의 현황 및 탑승 위치를 파악한다.

제22조(여객 준수사항의 전달) ① 선장은 여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전달할 때에는 여객 승선 중 또는 승선 완료 직후에 모니터, 선내 방송 시설을 이용하거나 선원의 직접시범 등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여객이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 시 한국어 방송에 이어 서 외국어로 방송한다.

② 여객이 지켜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의 출입제한 및 통제구역에 대한 출입금지  
2. 선원의 허락 없이 작동금지 또는 접촉해서는 안 될 설비 및 장치에 대한 접촉금지

3. 선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음주·가무 등의 금지

4. 선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 금지

5. 정원·화물적재능력을 초과하여 승선·적재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

6. 도박, 고성방가 및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금지

7. 선박운항관리자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8. 그 밖에 선원 등 종사자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등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금지

③ 여객에게 주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승·하선 질서의 유지

2. 구명조끼, 구명설비 및 소화기 위치와 사용법

3. 비상대피로 피약 등 비상 시 행동요령

4. 항행시간, 해상상태 및 입·출항 시 예정시간

5. 선내에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물건의 취급방법

6. 여객이 소지한 위험물에 대한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

7. 해양긴급신고 번호 119

8. 기타 여객이 알아야 할 사항

제23조(화물관리) ① 차량, 화물의 적재한도 등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의 적재한도 : 82.62톤<sup>2)</sup>

가. 차량의 최대 적재 수<sup>3)</sup>

차종	소형승용차	대형승용차	비고
수량	47대	34대	

나. 일반화물의 최대적재수량 : 10" 컨테이너 1 개

종류	컨테이너	기타	비고
수량 또는 중량	10 " 1개		
적재장소	화물창선수		

2. 최소 평형수 적재중량 : 해당사항없음

② 차량 및 화물의 고박장치 비치수량은 다음과 같다.

품명	수량	용도	보관장소
고박용 밴드	225	차량고박용(3톤)	화물창
고박용 밴드	4	컨테이너용(3톤)	화물창선수

③ 선장이 일반화물 및 차량화물의 적재로 인한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인 및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의 적재방법은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해양수산부고시)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선장은 선적화물(차량, 화물)의 종류, 수량을 확인하고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화물적재 시 선내 작업원의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화물은 지정된 장소에 적재하고 그 외의 장소(갑판, 통로)에는 화물을

2) 제화종량톤수와 명확히 구분 (최소평형수톤수 및 영구발리스톤수도 기록하여야 함)

3) 차량 한적 시에는 차량적재 가능톤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4. 화물은 적재한도를 초과하여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5. 화물의 선적 가능 시간은 출항 전 20분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화물을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선장은 화물고박장치도(별첨 : 차량적재도)에 따라 일반(차량)화물의 적재상태 및 복원성을 확인하고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출항하여야 한다.

가. 차량간격은 600mm 이상이 되도록 적재한다.

나. 차량구역 입구에는 차량적재도, 적재중량, 적재대수, 차량 적재 시 주의사항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다. 차량감판 내의 소방설비, 출입구, 계단 주위의 1m 이내 및 통로에는 보호띠를 설치하고 화물을 적재하지 않는다.

라. 기타 사항은 「커피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및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7. 선장은 여객선 운항 중 선원으로 하여금 차량, 화물의 고박상태 등 이상 유무를 매시간 1회 이상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4조(복원성 및 복원성 기록관리) ① 회사는 「선박안전법」 제28조에 따라 여객선의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복원성 자료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화물(차량)적재도를 차량감판상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고, 복원성 자료를 기록관리·유지하여 본선에 비치하여야 하며 그 사본 각 1부를 운항관리센터(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위험물 등의 취급) 해당사항 없음

제26조(정박 및 계류) 선박의 정박(계류) 시 선장은 아래 사항을 최종 확인 후 필요시 정박당직자를 배치한다.

1. 접안 장소와 중심, 선박의 홀수, 고조와 저조의 시각과 수위
  2. 계선 결속상태, 닻의 배치와 닻줄의 길이
  3. 주기관의 상태 및 비상 시 사용 가능성
  4. 선장에서 수행되는 작업, 선적되거나 남아있는 화물의 상태 및 양, 배치
  5. 선박폐수와 평형수 탱크의 양
  6. 표시되어 있는 신호 혹은 등화
  7. 선박에 남아 있는 선원의 수와 계선 중인 그 밖의 자의 현황
  8. 특별히 요구되는 항만규칙
  9. 선장의 당직지침과 특별 지시사항
  10. 비상상황 발생 시 또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항만당국을 포함한 선박과 육상의 이용 가능한 통신방법, 상륙자 비상소집 방법
  11. 선박의 안전 및 오염방지를 위해 중요한 기타 사항
- 제27조(선내 작업안전 관리) ① 선내 작업의 안전성이 필요한 작업의 경우 선장의 허가를 받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 ② 선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다.
1. 밀폐구역 작업
  2. 고소 작업
  3. 열 작업
  4. 여객승선구역 작업
  5. 선박의 수밀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
  6. 기타 선장이 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

## 제8장 비상상황 대응

제28조(사고처리 시 준수사항) 선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고를 처리

하여야 한다.

1. 인명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할 것
  2. 사고 시 사고처리 업무는 모든 업무에 최우선하여 시행할 것
  3. 사태가 낙관적이어도 항상 최악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조치를 강구할 것
  4. 선장의 대응조치 및 지시사항을 따를 것
  5. 선장 및 선원은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기 전에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될 것
  6. 육상종업원은 육상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
- 제29조(비상대응) ① 선장은 다음의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선원들의 임무, 소지품, 배치위치를 포함한 선내 비상부서배치표(붙임8)를 작성하여 조타실 등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반복 훈련으로 선원에게 주어진 임무를 숙지하도록 하며, 제반사항을 지휘함으로써 비상상황에 대처하여야 한다.

#### 1. 화재

2. 충돌, 좌초, 전복

3. 조타기 고장

4. 기관 고장(추진력 상실 포함)

5. 인명관련 비상 사고(퇴선, 익수자 발생 등 인명사고)

6. 해양오염 등

② 안전관리책임자와 선장은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한 대피장소를 지정하고 그 위치를 나타낸 도면(붙임3) 또는 그림, 비상 신호, 구명기구의 비치장소, 여객행동요령 등을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정전 시에도 선내에서 대피 장소까지 탈출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이동 경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선장 및 선원은 사고발생 시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즉시 사용가능한 통신장비 등을 동원하여 인접한 VTS 및 구조기관에 구조요청을 한 후 비상배치표에 따라 사고대응 및 수난구조기관의 구조협력과 안전

지시 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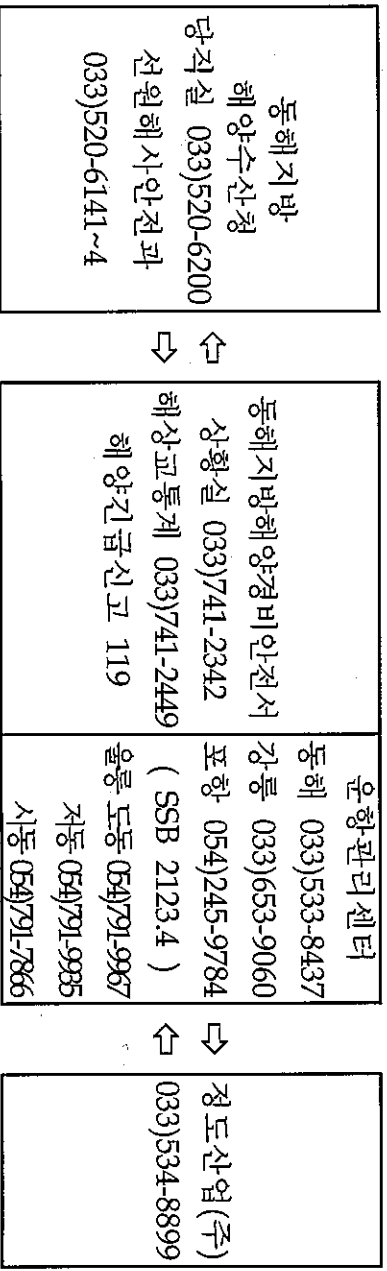
④ 선장은 비상상황 발생 시 경고방송, 기적 또는 사이렌을 이용하여 대 피지시를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장소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붙임10의 비상시 신호체계 및 여객의 행동요령

비상상황/퇴선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3층 우현선수 (일동항해사)	3층 좌현선수 (이동항해사)	3층 우현선미 (일동기관사)	3층 좌현선미 (이동기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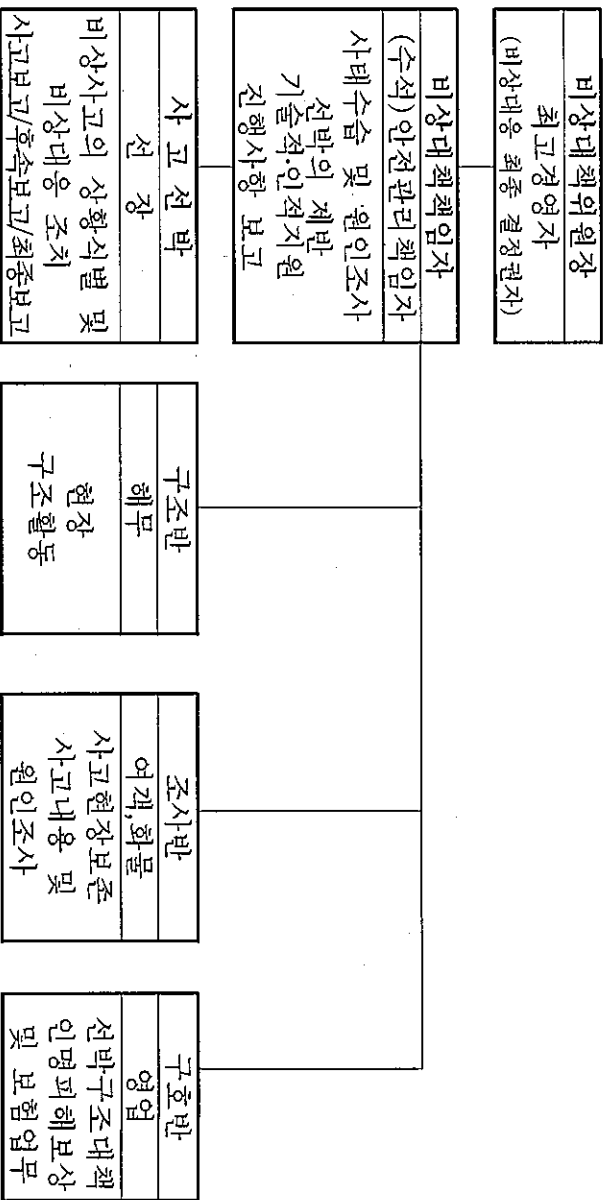
⑤ 선장 및 선원은 사고발생 시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우선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사고확대 방지 및 여객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사용가능한 통신장비 등을 이용하여 해양긴급신고번호 119 또는 구조기관 등에 즉시 구조요청을 한다.

【비상상황 연락기관】



【비상조직도 및 임무】



2. 비상대치표에 따라 사고대응 및 수난구조기관의 구조협력과 안전지시 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해양사고 및 응급환자 발생 시에 대비하여 인근병원 응급실 등 의료 기관과 비상연락방법을 확보한다.
  - 가. 동해병원(전화번호 033-530-3100)
  - 나. 동인병원(전화번호 033-530-0114)
4. 선장은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필요 시 사고처리에 대한 증거확보 및 현장을 보존한다.
5. 선장은 사고의 내용 및 진행상황을 수시 보고하며 입항 후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 운항관리센터 및 해양경비안전서에 제출하고 사고원인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제30조(피해보상 등의 조치) ① 회사는 해양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제29조제5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는 구조반 등과 비상대책책임자, 비상대책위원장을 계통으로 하여 피해보상반을 운영하고, 여객·선원공제

및 선주배상책임공제 등과 관련한 피해보상 조치를 한다.

제31조(안전교육 및 훈련 등) ① 여객선의 안전운항 및 해양사고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직원교육(선원 및 육상근무자 포함) 등을 실시한다.

1.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원에 대한 안전운항, 해양사고방지 교육의 실시 방법, 실시 시기, 실시 장소, 교관 요원 확보 방법이 포함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2.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원에게 분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3. 선장은 선사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계획을 토대로 선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4. 선장은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선원 및 기타 승선자의 휴식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② 선장은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선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부서매치표를 게시하고 비상시에 대비한 선내비상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훈련실시에 관한 내용은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고, 훈련 실시 상황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존한다.

③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해양사고 및 여객선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점검에 적극 참여한다.

④ 선박 비상대응훈련 및 교육시행주기는 다음과 같다.

구분		주기	대상자	
선내숙지훈련		수시	모든 선원	
소방훈련		10일	모든 선원	
퇴선훈련(구명정훈련)		10일	모든 선원	
구명정 진수훈련		2개월	모든 선원	
해양사고 대응훈련	선체손상 대처훈련 - 총통 및 좌초, 좌초 후대비 안전후대비	6개월	모든 선원	
		해상추락	6개월	모든 선원
		인명사고 시 행동요령	6개월	모든 선원
비상조타훈련		3개월	모든 선원	
기름유출 대처훈련		매월	모든 선원	



⑤ 선원 법정교육은 불임5와 같다.

### 제9장 선박의 점검·정비

제32조(선박의 안전점검) ① 선장은 운항관리자와 합동으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3조에 따라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을 수행한다. 다만, 운항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출항하는 경우에는 출항 전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 운항관리센터에 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항 전 점검 실시 결과 결함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 후 출항하여야 한다.

③ 여객선 정기점검(월례·특별점검·노후여객선 특별점검)은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여객선 정기점검표에 따라 실시하며,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지 제2호부터 제5호 서식에 의거 담당 운항관리자가 시행하는 점검에 안전관리책임자, 선장 및 기관장이 임회하여 수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책임자는 운항관리센터와 관계기관 및 검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점검에 임회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운항관리센터에 증빙자료(서류 또는 사진 등)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여객선의 장비 및 시설현황은 불임11과 같다.

제33조(육상설비 점검) 안전관리책임자는 선박 접안시설, 승객 탑승시설을 수시로 점검·확인하여 미비사항 발견 시 자체정비 또는 불가피한 경우 관계기관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34조(선내 정비 및 점검 등) ① 선체 및 갑판은 입거 시 보수정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기관실 및 기기류는 점검표(붙임7)에 의거 점검 및 정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감판 보기류는 점·이안 시 및 하역 시 정상적인 작동을 위하여 입항 전에 사전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 시 정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계선설비의 작동부에 대해 윤활유(그리스) 주입 등의 정비작업 및 고착부에 대한 낙청·도장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모든 창고는 정리정돈하고 거주구역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⑥ 항해장비 및 통신설비에 대한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⑦ 기적, 호중 등의 비치상태 및 항해 등의 작동상태를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 ⑧ 구명, 소화설비의 비치상태 및 성능을 수시로 확인하여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⑨ 항해 중 중요기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자체정비 완료한 경우 고장개소, 긴급조치 내용 등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상세히 보고하여 차기 정비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⑩ 장비 및 시설 등의 점검 후 여객선의 안전운항과 여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제35조(유류 관리) ① 기관장은 유류 수급 전 유류 잔량 확인, 유류 수급 설비 및 비상설비 점검, 비상연락수단 확보, 해양오염방지장치 배치, 당직인원 배치 등을 통해 유류 수급을 위한 준비를 한다.
- ② 기관장은 유류 수급 중 주기적으로 유류 잔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비상설비 및 비상연락수단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기관장은 유류 수급 후 유류 잔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유류기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유류 수급 시 해상에 오염물질이 누설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오염물질을 확인할 경우 즉시 유류 보급선과 선장 및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이를 알리고, 전 선원은 해양오염에 대한 비상대처활동을 수행한다. 선장 및 안전관리책임자는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해양경비안전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기관장은 오염방지자에게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6조(중선의 점검 및 정비) 해당사항 없음

### 제10장 자료관리

제37조(문서관리) ① 선장은 선내 문서관리의 총괄책임자로서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운항관리규정과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료관리
2. 수발문서의 최종 승인자로서 문서내용의 검증
3. 안전관리문서 및 외부문서 등 문서의 총괄관리
4. 선내문서 및 기록의 통제
5. 승선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자료 등에 대한 외부유출 방지 및 관리 철저

② 선내 부서별 문서관리담당자는 1등항해사, 1등기관사로 정하며 부서내 문서·기록의 수발신 및 작성·검토, 보관 및 폐기, 기록 관리의 제반사항을 관리한다.

③ 선장 및 안전관리책임자는 문서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환경 하에서 쉽게 검색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서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38조(문서생산 등) ① 문서의 작성, 검토 및 승인은 아래의 원칙으로 수

행한다.

1. 작성 : 업무 성격에 따른 실무담당자/책임자

2. 검토 : 상위직급자

3. 승인 : 선장

② 선장은 문서 내용에 따라 회람, 교육 또는 훈련 등의 조치를 취한다. 특히, 여객선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문서는 선원에게 공람 조치하여 숙지하도록 한다.

③ 선내 문서는 항상 최신본을 유지하여야 하고, 회람용 문서는 전 선원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

제39조(문서관리대상) 여객선에는 불임13 문서관리대상 서식에 따라 서류 및 증서 등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문서의 폐기) ① 선장은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무효화된 문서 및 자료는 회사에 제출하거나, 폐기여부를 결정하여 폐기하고 회사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실효된 문서를 법적/지식보존의 목적으로 보관하고자 할 경우, 안전관리책임자 및 선장은 “참고용”으로 표시하여 오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해도관리) ① 선장 또는 항해사는 항행통보를 수령한 후 해당 항로 해도 및 수로서지에 대한 소개정을 실시하고, 발행 연도말 기준으로 1년간 보관한다.

② 선장 또는 항해사는 본선에서 보유 중인 해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도목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2조(여객선 이력장부관리) ① 회사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명세

2. 선박의 도입 및 매매
3. 선박 도입 후 운항항로 이력
4.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결과
5. 해상사고 이력(「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
6. 선박 건조 이력(「선박안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조허가 대상을 말한다)
- ② 선장은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와 관련 근거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 제11장 운항관리규정의 확인, 검토 및 평가 등

제43조(운항관리규정 내부심사)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운항관리규정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활동 등에 대한 적합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항관리자의 정기적인 이행 상태 확인 전에 안전관리부서에 대한 내부심사 절차를 수립, 이행하여 검토 및 평가결과를 최고경영자 및 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는 회사의 문서화된 운항관리규정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평가결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44조(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원인조사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규정에서 요구하는 절차·조건에 누락
2. 사고(선체, 기관 및 화물사고, 인명손상), 기기 및 장비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손해 또는 운항 상 손실을 유발하는

경우

3.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비안전서, 선박검사기관 및 기타 외부기관 점검 지적사항

② 부적합사항은 시정조치 절차(붙임14)에 따라 기한 내 시정조치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관련기관 및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후 시정조치를 종결한다.

제45조(운항관리규정의 비치 등) ① 회사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 3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선박과 주된 사업소 및 영업소에 비치하여 소속 직원과 여객이 이를 열람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운항기준도를 선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해운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9의2호가목에 따라 운항관리규정 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규정의 적용) ① 이 규정은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3장에 따른 종선안전관리에도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운항관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객선의 선종별·톤수, 회사의 구조, 항만별 특성 등에 따라 가감·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이 규정 이외의 기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